

#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28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(물가대책회의, 2001. 1. 31)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함.(안 제1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처 승인 : 강원도 세회13400-361(2001. 2. 9)호 표준안

라. 입법예고 : 필요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2조제3호 중 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” 를 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시행한다.
- ② (일반적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3으로 한다.</u></p>	<p>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# 관 계 법 령 발 체

## 【지방세법】

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.

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·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

# 강 원 도

우 200-700 춘천시 봉의동 15 / ☎ 033-249-2881(행)2881 / FAX 033-249-4081  
 세무회계과      과장 민경호      세정담당 최준승      담당자 김태영

문서번호 세회 13400 -361

시행일자 2001. 2. 9.(년)

경유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 지방세 담당 과장

선	파	장		지	시		
람						세정담당	
접	수	일자	시간	결	재	부과담당	
		번호				세원조사담당	
처리과		세 무 과		공	람	징수담당	
담당자							
심사자				심사일			

**제목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통보**

1. 행정자치부 세제 13400-242(2001.2.5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,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시키려는 정부의 방침(물가대책장관회의, 2001.1.31)에 따라,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시·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별첨 과 같이 통보하니,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의 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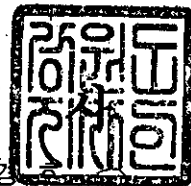
붙임 : 1. 00도00시(군)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
2. 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대비표 1부. 끝.

## 강 원 도 지

전결 세무회계과장 민경호

수신처 : 더(01~18)



민경호  
김태영  
최준승  
김태영  
김태영  
김태영  
김태영

## ○○도○○시(군)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○○도○○(군)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○○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제3호 중 “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” 를 “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〇〇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</u></p> <p><u>임대목적의</u> 공동주택 부속토 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 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한다.</p>	<p>제〇〇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</u> <u>대목적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